

치과 직원의 고용지원금

김 우 성 / 아이엔에이노무컨설팅

치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용지원금 유형

고용창출 지원금((신규 직원 채용시)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게 지원금(신규 직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) 지급
- 고용창출장려금: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(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,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등)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(신규 직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)을 지급

고용안정 지원금(기존 직원 근로조건 변경시)

- 유연근무 장려금: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(재택·원격·육아기 시차출퇴근 제도) 활용시 월 20만원 지원
- 정규직전환지원금: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,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는 5인 이상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
-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월 30만원 지원
- 대체인력지원금: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월 최대 120~140만원

학력 및 경력

- *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(인사/조직) 졸업
- *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인사위원
- * 한국능률협회컨설팅(KMAC) 컨설턴트 및 교육강사
- * 현, 아이엔에이(INA)노무컨설팅, 대표 공인노무사